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003152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고정은
피고, 피항소인 1.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권영균
2.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조수경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8가합53444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피고의 보증보험계약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B'라 한다)는 2006.부터 2007.경 사이에 2곳의 외국 선박발주자들¹⁾(이하 '이 사건 선박발주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총 8척의 선박에 관한 8건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각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선박발주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B가 이 사건 각 건조계약에 기하여 선박발주자들에게 부담할 수 있는 선수금 환급의무를 보증해 주는 내용의 8건의 선수금 환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한편,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받는 내용의 8건의 수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B가 신규수주 감소와 선박건조비용 상승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원고와

1) 사우디아라비아의 D 및 네덜란드의 E

피고들을 포함한 B의 채권금융기관들은 피고 한국산업은행(이하 '피고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주관 하에 2009. 12.경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는 2009. 12. 24. 제1차 협의회 결의를 통해 B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를 의결하였다.

- 의결권 산정은 기촉법 제23조에 근거하며, 협의회 소집 통보일 전일(2009. 12. 17.) 현재로 신고한 총채권 기준으로 한다.
- 기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절차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²⁾(2008. 4. 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간의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액은 피보증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에서 제외한다.

다. 제2차 협의회와 제4차 협의회 의결을 통한 손익정산약정

1)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1. 15.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

-
-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0호, 2018. 11. 1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폐지하면서 제정·시행된 것) 제3조 제2항에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관하여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 '긴급 운영자금 지원 및 손익정산 확약'이라는 의안을 가결함으로써 공동관리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간 손익정산 방법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2010. 4. 13. 개최된 제4차 협의회에서는 '채권금융기관 간 손익정산'이라는 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간 손익정산의 세부사항은 조선업 구조조정처리기준을 따르기로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손익정산기준을 정하였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 개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의 신용공여액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부여되었다. 이 사건 구상채권은 위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보증계약에 따른 장래의 구상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공사의 주채권에 산입되었고, 채권비율에 따른 의결권도 위 피고가 행사하였다.

라. 원고의 선수금 환급과 피고 공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

1) B와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4. 30.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이행 약정에 따라 B는 이 사건 선박들의 건조를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선박발주자들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한 선수금을 환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17.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277,034,537,569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원고의 수출보증보험계약 특별약정 위반을 이유로 147,167,732,98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이하 '지급거절 보험금'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6. 7. 피고 공사를 상대로 지급거절 보험금에 관한 보험금청구소송(이하 '선행 보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9. 18.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7031)으로부터 일부 승소(위 청구

금액 중 13,145,365,903원 인용) 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의 반대채권 매수청구 등

1)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협의회 제15차 협의회 부의안건(신규자금 지원 및 채권재조정 등 의안)에 반대하였음에도 위 안건이 가결되자, 2012. 11. 29. 구 기업 구조조정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3.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4)에 따라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라 한다). 원고의 위 부동산의 당시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도 이 사건 구상채권은 원고가 아닌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채권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서면에서 위 구상채권을 대상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협의회는 2013. 5. 31. 개최된 제17차 협의회에서 '제2호 의안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에 대한 처리의 건'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 관련 손익정산 시 최종채권잔액과 정산 후 최종채권액은 매수청구일(2012. 11. 29.)을 기준으로 실사기관인 J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채권매입가격은 위 J회계법인 실사보고서상의 청산시 채권별 회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산업은행으로부터 2013. 6. 17. 채권매매대금으로 8,453백만 원(=

4)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손익정산금 2,438백만 원 + 채권매매대금 6,015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선행 보험금 소송의 확정

선행 보험금 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81106)은 2013. 6. 13. '원고가 선박발주자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서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하여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지급한 것은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일반약관 제7조에서 피고 공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거나, 일반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공사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위 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3다208005)은 2014. 11. 13. 같은 취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및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와 파산채권 신고

1)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는 2014. 3.경 종료되었고, B는 2014. 4.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13. 그 개시결정이 있었다(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2014. 6. 10.경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 원금 146,596,592,790원 및 개시 전·후 이자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2) 그 후 2015. 11. 12. B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5. 11. 27. B에 대한 파산 선고결정이 있었다(창원지방법원 2015하합9).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2015. 12. 12. 이 사건 구상채권 중 보험금 부분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2. 11. 29.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서면에 기재한 대상채권에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선행 보험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구상채권 중 피고 공사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보험금 부분이 원고의 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손익정산금과 채권매매대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관리절차상 피고 공사의 채권으로 분류되었던 위 구상채권액 146,167,732,980원이 위 확정판결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선행 보험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재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채권매수대금 재정산 합의 주장).

나.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에 의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분의 추가에 따라 재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권매매계약 성립 주장).

다. 이에 따라 원고는 8,509,000,000원의 손익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매매대금 20,97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상계하면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매매대금 재산정 합의 주장에 대하여

1)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공사는 2013. 2. 25.경 피고 산업은행에게 선행 보험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의 손익정산비율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산

업은행은 2013. 5.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관련 채권비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갑 제13호증의 2)하였다.

소송 등으로 인하여 피고 공사와 선박 R/G 발급 채권기관(원고)간 실제 채권액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의결권을 행사한 채권기관이 자기책임으로 정산(이익 또는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에 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피고 공사와 R/G 발급 채권기관간 채권금액이 변동할 경우 이는 당사자 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고 공사가 요청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관련 채권비율 조정은 불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공사는 2013. 5. 13.경 원고에게 피고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위 회신 내용을 알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갑 제13호증의 1)하였다.

피고 공사는 부득이 현 비율대로의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 및 손익정산을 수용할 예정이나, 향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조정된 채권비율에 따라 재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알려드린다.

다) 피고 산업은행은 2014. 6. 12. 채권금융기관(F, 기술보증기금, G, H, I 및 피고 공사)에게 손익정산 금액 및 방법을 확정 통보하였는데, 채권금융기관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첨부하였다.

금번 손익정산에 피고 공사와 RG발급 금융기관(원고)간 소송 진행 중인 RG채권을 피고 공사의 채권에 포함하고, 상기 소송결과 및 반대채권자가 손익정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손익을 재정산할 것을 동의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선행 보험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을 재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산업은행의 2013. 5. 2.자 회신내용(갑 제13호증의 2)은, 피고 공사의 문

의에 대하여 '선행 보험금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건 협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정산 비율 조정은 불필요하며,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액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매매대금 재산정합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피고 산업은행은 당사자 사이에 처리가 가능한 손익정산을 전제로 회신한 것으로 보이고, 찬성 채권자들 전원이 처리해야하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른 채권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회신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반대증거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 공사의 2013. 5. 13.자 공문은, 피고 공사가 손익정산의 불이익을 피할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하여 주채권은행인 피고 산업은행에게 손익정산 비율 조정을 요청하고, 피고 산업은행의 회신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른 채권매매대금 산정 및 손익정산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최종 금액이 산정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정해진 최종금액을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부가적으로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된 채권비율에 따라 재정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미로 보일뿐,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 채권을 다시 정하고 그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산업은행의 2014. 6. 12.자 통보는, F, 기술보증기금, G, H, I 및 피고 공사에게 송부한 문서로서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채권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상의 손익정산⁵⁾에 관한 것일 뿐이다.

5) 여기서 말하는 손익정산은 구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결과 등으로 발생한 채권액의 변동을 협의회 내의 채권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정된 손익정산비율에 맞게 재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협의회를 탈퇴한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 사이의 채권매매대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을 B의 회생절차에서 회생 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선행 보험금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에 의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미리 정하고 있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고 정하여(제15조 제1항)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구 기촉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채권금융기관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협의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참조).

구 기촉법은 이러한 '신용공여'에 관하여 제2조 제6호 각 목⁶⁾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금융위원회 고시인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은 "기촉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채권(금융

6) 6.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기관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채권 등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간의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액은 피보증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받은 대상 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기관'과 '대출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피보증 채권금융기관)' 중에서는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절차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⁷⁾.

나) 또한 구 기촉법은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제5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이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하고(제18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8조 제2항),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채권금융기관 전원의 동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 정해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결의에 참석하였거나 그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기속된다.

한편 구 기촉법은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 제10조

7)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보증인)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제126조 제3항 단서)하고 있고,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20조 제1항 제2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 의결에 따르지 않고 협의회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게 된다(제20조 제1항 단서). 이러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면, 찬성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구 기촉법에 관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 당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은 반대채권자인 원고와 찬성채권자들 사이에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기촉법은 그 적용대상인 채권인 '신용공여'에 관하여 제2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단서는 '채권금융기관 간의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액은 피보증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과 같이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은 피보증 채권금융기관(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채권액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은 원고의 신용공여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나⁸⁾,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보증인(피고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고, 신규자금지원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부실징후기업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은 관리절차에의 참가가 강제되는데, 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채권 행사가 제약되고 추가 신용 공여 의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대상 회사에 대한 (사전) 구상채권이 신용공여액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도 원고가 아닌 피고 공사의 신용공여액으로 신고되어 피고 공사가 계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다.

8) 한편, 대법원은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의 '채권은행협약'과 관련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이 보증한 이 사건 대출채권 이외에 다른 대출채권도 있었는데, 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이 규정된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른 대출채권에 의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아 의결에 참여하더라도 이자 감면 등 채권조정에 관한 그 의결의 효력이 이 사건 대출채권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따라서 원고의 2012. 11. 29.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 당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은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 내에서 기촉법이 정한 원고의 채권(신용공여액)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채권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 당시 선행 보험금 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승소(청구금액 147,167,732,980원 중 13,145,365,903원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나,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원고로서는 피고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구상채권이 신용공여에 포함되어 채권 행사가 제약되고 추가 신용 공여 의무를 부담하다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도한 후 청산가치 상당의 채권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을 매도 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없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를 하면서 매수청구서면에 이 사건 구상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을 위 채권매수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에 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선행 보험금 소송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3년여 동안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이 찬성채권자들에게 매도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반대채권매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금융기관이 기촉법에 따라 자신의 의

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에 찬성한 채권 금융기관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벗어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 부담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반대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2) 원고는, 이러한 반대채권매수제도의 취지상 반대채권자가 보유하는 채권 전부를 매수청구 대상으로 하고 반대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채권 기재에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반대채권자가 보유한 채권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채권일부만의 매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대채권매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① 구 기촉법 등이 향후 보증인이 면책되는 등 채권금융기관의 사전구상금 또는 사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의 적용대상인 피보증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소급하여' 포함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②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 구 기촉법상 원고의 신용공여 채권이 아니어서 반대채권매수청구의 행사 대상 채권이 아니었음에도, 그 귀속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찬성채권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 상당 기간 참여하였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거나 찬성채권자들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

권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법률의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며,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대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반대매수청구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대매수청구권이 가분적인 권리이고, 반대채권자 스스로 그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으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찬성채권자 입장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을 B에게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을 '소급하여' 매매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미 협의회의 부의안건에 반대하여 반대채권자로서 채권매수를 청구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대상인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매매가 성립한 이후에 보증인인 피고 공사의 면책 사유가 밝혀져 원고의 신용공여액이 뒤늦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원고는 구 기촉법 제19조 제5항 제2문, 제20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1) 구 기촉법 제19조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제5조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위와 같이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되(제2항),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항). 한편,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제4항),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 기간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제5항).

(2)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실제법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매수청구의 기회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 이후 장래를 향해 부여하고 있을 뿐, 소급하여 매수청구를 의제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의 선행 보험금 소송은 2014. 11. 13.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을 자신의 신용공여액으로 신고하고 위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고(원고는 그 후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3년 이상 동안 매수청구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하였을 뿐이다), 선행 보험금 소송의 확정 무렵에는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라) 나아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구상채권 중 지급거절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 면책되어 대상 회사를 상대로 이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되

는 법률관계를 상정한 협의회 결의나 채권금융기관 간의 합의나 약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협의회 결의나 채권금융기관 간의 합의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장준아

판사 김경애